

분담금의 면제·경감에 따른 감면사업자 공고

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 및 가산금)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-9호)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도 방송사업자 분담금의 감면자·감면금액 및 감면사유를 공개합니다.

2018년 11월 16일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감면자·감면금액 및 감면사유

(단위 : 원)

구분	감면자	감면금액	감면사유	
지상파 방송사업자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173,470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	
	(재)부산영어방송재단	232,440		
	(주)문화방송 DMB	1,188,000		
		소계	1,593,910	
		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	442,123,752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
		(주)와이티엔라디오	4,881,405	
		(재)평화방송	6,738,896	
		(재)기독교방송	100,440,784	
		(주)와이티엔디엠비	3,069,060	
		한국디엠비(주)	1,081,174	
		유원미디어(주)	1,429,074	
	소계	559,764,145		
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자 ·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	(주)제이티비씨	3,026,530,146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	
	(주)채널에이	239,260,100		
	(주)매일방송	37,947,565		
	(주)조선방송	165,969,844		
	(주)연합뉴스티브이	337,103,996		
	소계	3,806,811,651		
총 계			4,368,169,706	

2. 근거법령

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 및 가산금)

-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·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<개정 2013.10.30., 2015.6.22.>
1.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가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
나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
 2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(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 총액 이상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 3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
- ② 삭제 <2013.10.30.>
-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3.29.>
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-9호) 제8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사유 등의 공개)

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·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